

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부개정약관안

1. 개정취지

-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, 시·군·구 출장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정일자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록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지 않기로 함
-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사업으로 추가 간편 결제수단을 도입할 예정인 바, 다른 결제수단 추가를 대비하여 수수료 지급방법을 보완

2. 주요내용

- 확정일자 부여현황 부존재 형태의 열람 삭제(제6조제5항7) 삭제)
- 수수료 지급방법에 ‘등’ 을 추가(안 제8조)

3.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 부개정약관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약관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부개정약관안

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7)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휴대폰”을 “휴대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내역”을 “사용내역 등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약관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 (서비스의 내용) ① ~ ④ (생략) ⑤ 열람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. 7) <u>확정일자 부여현황</u> 부 존재 형태의 열람 : 주 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<u>확정일자가 없을 경우</u> 에 는 4),5),6)형태의 <u>확정</u> <u>일자 부여현황에 그 뜻</u> <u>을 기록한 내용을 볼 수</u> <u>있다.</u>	제6조 (서비스의 내용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<삭제>
⑥ ~ ⑭ (생략) 제8조(수수료의 지급방법) ① ‘을’은 ‘갑’에 대하여 열람, 발 급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 발급예약, 법인인감증명서 발 급예약,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‘갑’이 지정한 카드사 의 신용카드, 지정 금융 기관 의 계좌이체, 지정 선불전자지 급수단 발행업체의 선불전자지 급수단, 이동통신사의 <u>휴대폰</u>	⑥ ~ ⑭ (현행과 같음) 제8조(수수료의 지급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휴대폰

[illegible]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6041